

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년 9월 14일
행정재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년 9월 5일, 금천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23년 9월 5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4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최 중
제1차 행정재경위원회(2023년 9월 14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- 가. 제안이유
 - 상위법령 제명의 개정 및 용어의 변경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.
- 나. 주요내용
 - “음주청정지역”과 “음주청정구역”을 같은 용어로 정비(안 제3조 제1항)
 -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한 인용조문을 변경(안 제3조 제1항 제2호)

3. 관계법령

-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8조 제1항 제1호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박병규

나. 검토의견

-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인용이 「학교보건법」에서 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로 변경(2016.02.03.)됨에 따라 상위법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같은 조례 내 “음주청정구역”을 “음주청정지역”으로 용어를 통일하여 정비하는 것으로
- 상위법령 및 관련규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생략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